

의안번호	2208429
의 퇴 인	장종태 의원
회 답 일	2025.3.17.
추계번호	25C0865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	(제3항)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2의2. 소방·경찰·군공무원, 교정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
2	안 제10조(실태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2. 성별,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,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
3	안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)	(제5항)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소방·경찰·군공무원, 교정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신건강검진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국가계획의 수립 등)	·현행 국가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·발표하고 있으며, 2021년에 “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(2021~2025)”을 발표하였고,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함 － 개정안은 동 기본계획에 하나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2	안 제10조(실태조사)	·제5차 정신건강실태조사(2021년 예산 기준 10억원)는 성별, 연령, 결혼상태, 자녀유무, 취업상태 및 직종(직업별), 소득수준 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－ 보건복지부가 기수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직업별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현황 등을 포함하는 것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
3	안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·경찰·군공무원¹⁾, 교정공무원, 교직원, 어린이집·유치원 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)을 대상으로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,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특수 직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취지임²⁾
- 개정안은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상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관련 추계 시 필요한 정보, 즉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세부 직업별 종사자 수, 무상 정신건강검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, 검진 횟수 및 기간, 수검률, 해당 검진을 수행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대되는 예산 및 규모 등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또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무상 정신건강검진 등 개정안에 대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위임³⁾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1) 참고로, 경찰공무원·소방공무원·군인의 경우 각각 「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,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원법」 및 시행령,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실태조사, 기본계획 수립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

2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“정신건강 증진사업”(2025년 예산 기준 1,317억 9,600만원)을 통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·지원을 하고 있으며,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하고 있음

3) 안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9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